#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0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김병주·박 정·이기헌

민병덕 • 윤후덕 • 허 영

정동영 · 추미애 · 임오경

위성락 • 박지원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군에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명시하고 있음.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으며, 기관 간 업무협조와 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건도 구현되기 어 려운 상황임.

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등).

#### 법률 제 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군 내 기본권 침해의 진정) 군인(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 등의 경우(이하 "군 내 기본권 침해"라 한다) 또는 다른 군인의 군 내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각 부대·기관의 장(이하 이장에서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따라 진정할 수 있다.

- 1. 제3장의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 2.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군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제42조의3(군 내 기본권 침해의 조사 및 구제) ① 국방부장관등은 제 42조의2에 따른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진술 요청
- 2. 진정 사건과 관련된 부대·기관·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 3. 그 밖에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기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등은 별도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 내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침해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진정 사건의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직권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거나 관계 부대·기관·부서의 장에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등으로부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은 부대·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구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의4(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 군인(군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은 군 내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신고의무 등)"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 본문 중 "제43조"를 "제42조의2, 제42조의4 및 제43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 등에 게 접수되어 있는 진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u>군인</u>	국가인권위원
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2조의2(군 내 기본권 침해의
	진정) 군인(군인이었던 자를 포
	함한다)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본권 침해 등의 경우(이하 "군
	내 기본권 침해"라 한다) 또는
	다른 군인의 군 내 기본권 침
	해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
	<u>는 각 부대·기관의 장(이하</u>
	이 장에서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절차에 따라 진정할 수 있
	<u>다.</u>
	1. 제3장의 군인의 기본권을 침
	해당한 경우
	2.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금

<신 설>

- 지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군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 제42조의3(군 내 기본권 침해의 조사 및 구제) ① 국방부장관 등은 제42조의2에 따른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 로 조사할 수 있다.
  - 1.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진술 요청
  - 2. 진정 사건과 관련된 부대· 기관·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 3. 그 밖에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기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등은 별도의 진 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 내 기 본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침해 여부에 대하여 직권 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진정 사건의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직권 조사 결과 기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 구제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이행하거나 관계 부대·기관·부서의 장에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등으로부터 제4 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 받은 부대·기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조사 및 구제의 구 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 <신 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 권위원회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 정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군 대외기관을 통한 구제) 군인(군인이었던 자를 포 함한다)은 군 내 기본권 침해 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 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 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생 략) | 제43조(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 유)

<삭 제>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 장)-----제42조의2,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 제42조의4 및 제43조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 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 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 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u>